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45호(그2)
2024. 1. 18.(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0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09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제461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제4611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5
제4612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60
제4613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0
제4614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4
제461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8
제461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1
제461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9
제4618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93
제4619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5
제4620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09

◆ 공 고

제2024-14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118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사항과”를 “지방보조금 및 신고포상금 등과”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편성 등

제2조 중 “제7조”를 “제3조”로 한다.

제7조를 제2장제4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7조) 제1항 전단 중 “제29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을 “제10조”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환수 등

제5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법령 위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째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반환·환수 처분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등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중복 지급 금지 등)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

금등의 신청 사실이 있으면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거짓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〇〇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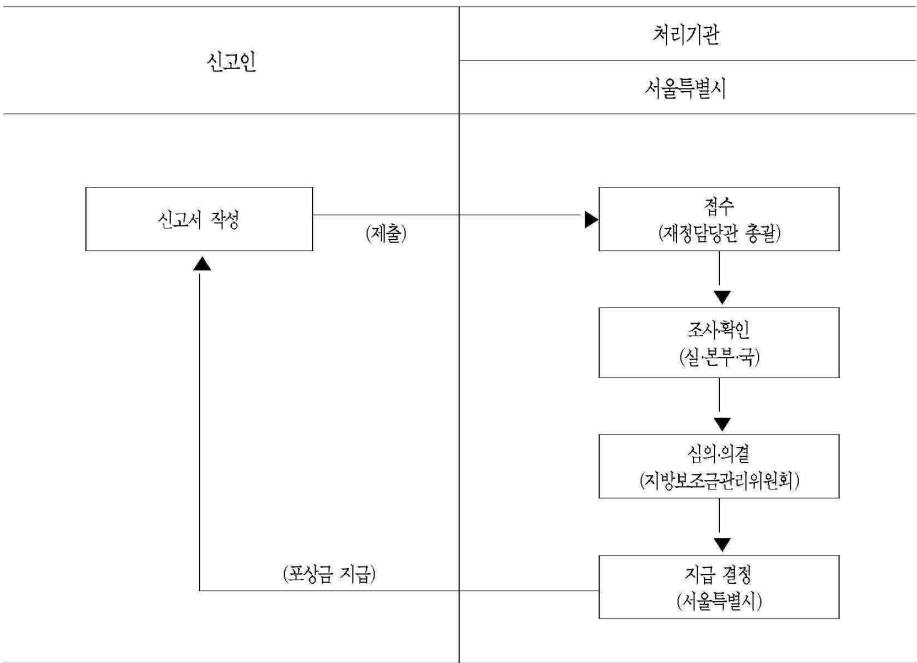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 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OO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④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제9조제1항 관련)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ㄴ ㅁ ㄹ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방법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제6조제3항 관련)

[illegible]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보조사업 법규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포상금 내용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반영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1항)
 -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 지방보조금 조례와 내용 일치
- 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 조항 일치 (제2조 및 제4조제1항)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실적보고
- 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9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각 과 · 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렬·직급 조정제외)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나. 직급 상향조정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기안	기안		○		조직담당관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나. 3급 보좌 기관 다. 4급 라. 5급이하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기안			○ (인사 과장)			○	○	
	가. 3급이상	기안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나. 4급이하	기안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 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예산담당관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8. 지방채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기획조정실장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3. 원리금 상환	기안		○				예산담당관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0이상	기안			○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의원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 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 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 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2. 설계·공사 감리용 역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 한 사항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 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 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3. 물건의 제조·구매 ·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물품구매·임대차 등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 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 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 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 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15. 분담금, 청산금,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보조금 및 교부금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1) 5억원 이상		기안			○		
	2) 5억원 미만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6. 보 상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7. 수수료 및 사용료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입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 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준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0. 의회업무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1. 행정심판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기획담당관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22. 민사, 행정 등 소 송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 출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 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가. 중요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다. 집행정지	기안		○				
23. 법규(법령·조례 ·규칙) 입법(제정 ·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 ·공고 등		2. 소송수행							법률지원담당관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기안○					법무담당관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및 폐지안						○	
	1) 중요한 사항			기안				
	2) 경미한 사항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4. 자료제출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법무담당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6. 회 의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전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7. 민원 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8. 지방공사 지도 감독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 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30.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자치행정 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32. 의전행사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 서						젠더자문관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 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4. 의료보험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급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기안			○ ○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38. 행정 정보공개(청 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기안			○ ○			
39. 행정 정보공개 (원 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기안						
40. 처리과 기록물 관 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3. 기록물 폐기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기안 기안	○ ○		○ ○ ○			
41.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42. 공모전 운영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 능 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민간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전결권 조정
- 나.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 반영
- 다. 재산 및 채권관리 사무 세부 항목 용어 정비
- 라.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 공포 여부 결정에 대한 전결권 보완

2. 주요내용

- 가. 민간 보조금의 지급계획 수립 시, 5억원 미만의 경우 실·본부·국장으로 전결권 하향
- 나. 민원 종결처리 시, 일반적 반복민원의 경우 과장으로 전결권 하향
- 다. 일반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여, 행정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대한 전결권 정비
- 라.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 공포 결정 시 중요한 사항은 시장, 경미한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 홍보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원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 「여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관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	구청장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구청장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 「대외무역법」 제33조 ○ 「대외무역법」 제59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구청장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 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20조	
농수산물통당담당관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2.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 「양곡관리법」(' 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8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구청장

	3.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구청장
--	--	-----------------------------------	-----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같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마.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같은 법 제30조제2항 ○ 같은 법 제31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제2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7호·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제6호의자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무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제15호가목·제26호퍼목·제27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2.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차고 등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1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8호)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승차거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 제2호부터 제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권 및 민원신고권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10.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 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6호)	구청장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권 및 민원신고권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7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3-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의3호)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구청장
	16-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구청장
	18.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품질시험 소장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구청장
	20.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운송사업·화물)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청장
물류정책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 같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 같은 법 제3조제9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개선명령 바.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사. 상속의 신고 아.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카. 허가취소 청문 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파.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대한 청문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 같은 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 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개선명령 바.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사. 상속의 신고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자. 허가취소 청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 같은 법 제24조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 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제1항제5호	구청장
대기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다.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다목) ○ 같은 법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라목) ○ 같은 법 제4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마목)	구청장

	라.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 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정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나. 이륜자동차정비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8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2호바목) ○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2항,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구청장 구청장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폐·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구청장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반송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같은 법 제39조 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구청장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구청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구청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같은 법 제39조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구청장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같은 법 제19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호)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 같은 법 제19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4호)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5호)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6호)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7호)	
아.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8호)	
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9호)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10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경 사항 라. 법인권련 지도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민법」 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

☐ 평생교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소년정책과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규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제4항	구청장
	2. 어린이활동공간 등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남북협력과	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구청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구청장

☐ 재난안전관리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구청장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바. 시정명령·지시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구청장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허가	○ 국유재산법」 3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같은 법 제35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호	구청장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피해사실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9조 ○ 같은 법 제13조, 제29조	구청장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지의 지정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라. 사방사업의 시행 마.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바. 공무원의 조사 등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사업법」 제6조 ○ 「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법」 제7조의2 ○ 「사방사업법」 제9조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아. 수익의 귀속 자.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제17조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아. 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	○ 「하천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 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1호 아목) ○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자목) ○ 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 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 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	구청장 (다만, 한강은 미래한강본부장)

	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미래한강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항제1호하목) ○ 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	구청장 (다만, 한강은 미래한강본부장)
	3.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마.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국유재산법」 제30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72조, 제7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저목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나.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3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구청장

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회석 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마.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
바.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7호)
사.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차.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타. 같은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9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파.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 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하.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거. 같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
너. 같은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8호)
더.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61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9호)
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검사	○ 같은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머.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 같은 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버. 같은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 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서.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어.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저.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처.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커.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터.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퍼.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제1항제3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제1항제3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소방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및 추가

-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주관부서를 공정경제담당관에서 농수산유통 담당관으로 변경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등의 주관부서에 자원회수시설과 추가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1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 을 “사항 및” 으로, “수행하는 데” 를 “수행하는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고시·공고·훈령·예규·자치법규” 를 “훈령·예규·고시·공고·자치법규”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계 관련 고시·공고문은 제외한다.

제2장의 제목 “자치법규 입법 및 중요문서 심사” 를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의 입안”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 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표준안” 을 “참고안” 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요문서 심사 등” 을 “중요문서심사 등” 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중요문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발령 및 고시·공고하기 전에 중요문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중요문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서 중요문서안에 대해 사전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요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은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을 “주관부서의 장은” 으로, “대하여 심사” 를 “대한 심사를 행정예고 실시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의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중요문서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없이 고시·공고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제13조 중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예고심사, 규제심사, 행정예고, 중요문서심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소집 및 의결)”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전단 중 “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법령질의 및 회신”을 “법령·자치법규 질의 및 회신”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법령 질의) ① 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먼저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회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는 때에

는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회신을 받은 때에는 회신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자치법규의 질의)” 를 “(자치법규 질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를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치법규(훈령·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운영·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민원인을 포함한다)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에 질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재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④ 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회신)” 을 “(자치법규 질의의 반려 및 이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의에 대하여” 를 “질의가” 로,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를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제1항에” 를 “제34조제3항에서” 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외부기관 질의)” 를 “(자치법규 질의의 회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등에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그 검토의견을 주관부서 및 법무담당관에 통보한다.

제37조제1항 중 “담당관·과” 를 “과 또는 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에 관련” 을 “과와 관련”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장” 을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이 장

에서 “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주관부서 접수)”를 “(안전접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과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재분류)”를 “(안전의 재분류)”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검토)”를 “(안전검토)”로 한다.

제8장(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의요구”를 “재의요구 지시”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재의요구”를 “재의요구 지시”로 한다.

제48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주관부서(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2조제2호의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과 또는 담당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해당”으로, “담당관을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협조부서로”를 “담당관)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현행화 등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심사 생략 규정 신설(제10조), 행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개정사항 반영(제11조)

나. 중요문서의 정의 정비(제2조), 중요문서 심사 근거 규정 신설(제12조)

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관련 규정 정비(제33조~제36조)

라.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의결에 대한 근거 신설(제24조제4항)

마. 법령집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삭제(제42조~제45조)

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등 기타용어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2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사업소 및 시 투자·출연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과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자는 공간정보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를 “사람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본청”을 “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 본청 외 각급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보안담당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보안담당관의 임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구”를 “자치구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2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각급기관”을 “시장 및 각급기관”으로, “생산 공간정보를 별표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를 “공간정보를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을 “업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을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를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로,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과물포함”을 “성과물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을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로, “가능 하도록”을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비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를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간정보유통관리망 보안담당자”를 “공간정보유통망 보안관리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방대책 마련”을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는 각급기관의 장이 수행하며, 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력, 제공한”을 “출력·제공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각급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안담당관”을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시·구”를 “시·자치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주용역”을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외주용역”으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을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기관”을 “시장 및 각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공개”를 “비공개 공간정보”로, “취급”을 “취급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을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으로,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에 위협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도방문)” 을 “(지도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 을 “확인하고” 로, “지도방문(이하 “지도방문” 이라 한다)” 를 “지도점검(이하 “지도점검”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방문” 을 “지도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을 “시장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으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을 “보안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안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그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8조” 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기관” 을 “시장 및 각급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 을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을 “(공간정보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심의위원회” 를 “공간정보보안심사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디지털정책관, 부위원장은 공간정보담당관이 각각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제6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자료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주소정보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주소정보 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주소정보안내도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조 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각급기관과 자치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이하 “공간정보 등” 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간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조와 같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에 현 보관장소에 공간정보 등을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절차

가.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로 파악될 경우에는 즉시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간정보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나.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1)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보관책임자(부) 및 그 소속직원이 반출요원이 된다.

(2) 반출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이용하여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해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 까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 반출장소: 보안담당관은 반출장소를 작성하여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 내부에 비치한다. 보안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정된 보조요원이 행한다.

5. 파기절차

가. 파기절차는 제4호에서 정하는 반출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 보관책임자는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탈취당할 긴박한 상황인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다.

6. 최종확인 및 보고

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	공간정보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보안 담당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으로 기재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지침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을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으로 변경함(제6조, 별표 1)

나. 위성영상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변경(제6조, 별표 1)

－ 위성영상 공개제한 정보 해상도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

－ 국가보안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협의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다.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גיע획 세부 내용 신설(제5조, 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3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시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시 보존묘지등”을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용미리 제1·2묘지 및 벽제리묘지 내 합장하는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립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 망우리묘지에 매장 후 개장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망우리묘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립장사시설 현황(제5조 관련)

1. 묘지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세부주소
망 우 리 묘 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91길 2	분묘시설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1-2, 산52-3, 산56, 산57-1, 산57-2, 산57-3, 산57-4, 산57-5, 산57-6, 산58, 산59, 94-2, 103-1, 105, 106-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1-1, 산1-3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34-1, 산34-4, 산37, 산39-2, 산39-32, 산39-33, 산39-34, 산39-35, 산39-36, 산39-37, 산39-38, 산39-39, 산39-40, 산39-41, 산39-42, 산39-43, 산39-44, 산39-45, 산39-59, 산39-60, 산39-61, 산39-81, 산39-82, 산39-83, 산39-85, 산39-86, 산39-87, 산84-1, 산145
내 곡 리 묘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99-2	분묘시설 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99-2, 558-3, 558-4
벽 제 리 묘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1	분묘봉안시설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1, 산4-4, 산5, 산6-1, 산6-2, 553-1
옹 미 리 제1묘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509-20	분묘봉안시설 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옹미리 산68-5, 산91-9, 산92-2, 산93-3, 산93-6, 산93-19, 산93-29, 산94, 산95-1, 산96, 산97-1, 산98, 산101-7, 산102-2, 산105-1, 산107, 산109-1, 20-1, 38-5, 326-10, 346-14, 346-37, 549, 555-2, 580-3, 580-5, 580-6, 581-8, 581-9, 581-10, 581-11, 581-12, 584-5, 584-6, 584-8, 584-9, 584-10, 585-10, 585-12, 586-6, 586-8, 586-9, 586-10, 610-9, 610-10, 618-1, 618-4, 618-5, 808-15, 808-32, 808-35, 808-36, 808-37, 808-38, 808-39, 808-40, 808-41, 808-42, 809-7, 811-6, 811-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1-1, 산61-6, 산61-13, 산61-35, 산61-36, 산61-37, 산61-38, 산61-39, 산61-41, 2-7, 8-10, 615-1, 618-1
옹 미 리 제2묘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51	분묘봉안시설 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옹미리 산65-1, 산65-6, 산65-7, 산65-8, 산67-1, 산75-7, 산75-9, 산75-12, 16, 17-1, 17-2, 18, 19-2, 24-2, 25-3, 25-5, 28-2, 29-3, 30-2, 36-4, 36-5, 37-2, 38-3, 42-7, 45-1, 52-1, 53-2, 59-2, 83-7, 83-10, 184-2, 209-1, 210-4, 211-3, 223-4, 226-2, 226-3, 227-3, 227-5, 267-4

2. 화장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의 종류
서울시립승화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화장시설 및 부수시설
서울추모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3. 봉안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의 종류 및 위치
승화원 추모의 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시립승화원 내 봉안시설
용미리 분묘형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509-20	용미리 제1묘지 내 왕릉식 합동분묘
용미리 벽식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509-20	용미리 제1묘지 내 옥외벽식 봉안묘
용미리 건물식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51	용미리 제2묘지 내 건물식 봉안당
용미리 왕릉벽식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509-20	용미리 제1묘지 내 왕릉벽식 봉안시설

4. 자연장지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의 종류 및 위치
서울시립자연장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용미리 제1묘지 내 자연장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진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시장이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연장토록 함.

또한 근·현대사의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시립망우리묘지의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위상정립 위하여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역사적 인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매장을 허용토록 규정함.

아울러 시립장사시설 중 망우리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랑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소유자 변경, 토지이동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는 시립장사시설 현황을 현행화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제1항)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조항 삭제

나.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역사적 인물의 망우리묘지 재매장 제한적 허용(제7조제2항)

○ 망우리묘지에 매장 후 개장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매장 허용

다. 시립장사시설 중 망우리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랑구청장에게 위임(제13조제1항)

라. 시립장사시설 현황 현행화(별표1)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4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승인결과”를 “승인여부”로, “공개하여야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미 이행한”을 “미이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개최도시”를 “개최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마이스 단체 행사”를 각각 “마이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서울특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최근 1년간 마이스 유치·개최실적이 뛰어난 단체(개인)	1천만원
최근 1년간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추진실적이 우수한 단체(개인)	1천만원

※ 비고

- 가. 최근 1년간의 실적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 나. 1인(단체)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마이스산업육성 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① 신 청 인	단 체 명	# 개인일 경우 미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개인일 경우 미기재
	대표자 또는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② 마 이 스 유 치 · 개 최 현 황				
행사명				
개최 기간				
(해외) 주최기관 · 단체		대표자 성명:		
(국내) 주관기관 · 단체		대표자 성명:		
참가규모		전체 명	외국인 명	
③ 서울시 마이스 업계 이용현황 (서울특별시 내) ※ 해당 항목만 작성	숙박		호텔명 : 박 수 :	
	주요 행사장 (유니크베뉴, 컨벤션 센터장 등)			
	쇼핑(면세점, 백화점 등)			
	관광	유료 건	무료 건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유치 · 개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계약서 및 행사 프로그램 등) 각 1부 - 일시, 장소, 인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2. 숙박규모 및 인원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3.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추진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4. 은행계좌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그 밖에 서울시가 정하는 서류 ※ 1호~6호 중 행사에 따라 제출 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			수수료
				없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마이스산업에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되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 마이스 기업 및 단체의 ESG 실천 등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에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을 신설함(제4조제1항)

나.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실천 관련 지급기준을 추가함(별표)

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재정비함(별지 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이용범위)” 를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를 “제7조제1호의 이용자 외” 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를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14조제9호 중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을 “지원시설”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단위	기준금액(원)
인생재설계과정	기초	1시간/1명	시간당 2,000
	심화	1시간/1명	
직업역량개발과정	기초	1시간/1명	
	심화	1시간/1명	

2.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 고
강당		120,000	1회 2시간	1. 야간, 주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다음 날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으로 함. 4.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5. 이용인원은 강당 약 100~120명, 소강당 약 100명 이하, 교육실 및 북카페 약 15~30명
소강당		70,000		
교육실		30,000		
북카페		200,000		
창업·창직 지원공간		1,000원~5,000원	㎡당/1개월	1.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름 2. 관리비 별도
연수원		40,000(2인실)	1박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
		70,000(4인실)		1.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 2. 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50플러스재단의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공간 재구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공간 대관 형태를 <별표1>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기본시설 사용료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부 교육과정을 통합, 변경하고 수강료 단위 및 기준금액을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
- 나. 강당 사용기준을 다른 교육 공간과 동일하게 통일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하여 창업·창직지원공간 사용료 납부를 일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를 “별표에”로, “별지 제1호 서식의”를 “별표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을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으로, “인계·인수한다”를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물품검수조서 등)”을 “(물품검사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를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로 하며, “검사서”를 “물품검사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서식 제12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0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9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제11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1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의2”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의2”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0조” 를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0조” 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1조” 를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1조” 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4조” 를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4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제2조제5항 관련)

구 분	물품관리 총괄관 (보조총괄관)	본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본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실·국·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	차량	총무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담당사무관		
			그 외	재무과장	그 외	재무과 물품담당 사무관		
소방재난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재무국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소방재난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각 부서의 장 / 119안전센터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 119안전센터 물품담당 공무원
서울아리수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그 외: 재무과장)	서울아리수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시의회 사무처		-	-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각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회계법에 의거 별도 임명					

[별지 제39호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 (₩)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대상 (), 비대상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물품 검사 (수) 내역서

[illegible]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
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 ⑧ 검사(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⑨ 검사(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또는 비대상에 “O” 표시 합니다.
- ⑪ 검사(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⑫ 검사(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사(수)자로 지정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합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책임자를 조직현황에 맞춰 현행화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칙명,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22.10.17.)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규칙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별표(제2조제5항 관련) 신설)

－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각 경찰서’ 물품관리책임자 지정 등

－ 기관별 물품관리책임자를 규정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다.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을 인계·인수하는 것에서 인계·인수 후 총괄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제48조)

라. 규칙 본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명과 조례명, 용어와 문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제1조, 제2조제1항, 제52조, 별지 제9, 10, 12, 제12호의2, 12호의3, 12호의4, 제13, 14, 19, 제19호의2, 19호의3, 19호의4, 제22, 24, 36, 39, 40호서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물품검수조서’ 를 조례상 용어인 ‘물품검사조서’ 로 변경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4		가뭄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5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6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파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10		대규모 황사 발생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1	사회 재난	산불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12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3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4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15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6		도시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7		고속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8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9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1		가축질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2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3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5		전력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6		원유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7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28		식·용수 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30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1	사회 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33		도시가스 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
35		위험물 사고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물유통담당관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39		해외재난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4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3		버스 총파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44		택시 총파업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45		지하철 파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46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47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48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9		지반침하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5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51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52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53		대형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54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55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6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57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58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9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60		열공급 중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61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
 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본부·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범주에 ‘다중운집 행사 중
 피해’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추가하고,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를 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함(별표2)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8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1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운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제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준용)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제13조 신설)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실현성·적정성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등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19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검사주기 및 대상(제40조 관련)

(단위: mg/L)

구 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월간	분기	연간	
미생물 (10항목)	녹농균	불검출/250 mL		○		정수
	바이러스	정수처리기준 1)		△ 5)		"
	분원성연쇄상구균	불검출/250 mL		○		"
	살모넬라	불검출/250 mL			○	"
	쉬겔라	불검출/250 mL			○	"
	아황산환원협기성 포자형성균	불검출/50 mL			○	"
	장구균	불검출/100 mL		○		"
	저온일박세균	500 CFU/mL 이하		○		"
	지아디아	정수처리기준 2)		△ 6)		"
	크립토스포리디움	정수처리기준 3)		△ 6)		"
무기물 (11항목)	니켈	0.07 이하			○	"
	몰리브덴	0.07 이하		○		"
	바륨	0.7 이하		○		"
	베릴륨	0.004 이하			○	"
	브롬이온	2 이하	○			"
	스트론튬	4 이하		○		"
	아질산성질소	1 이하			○	"
	안티몬	0.02 이하			○	"
	우라늄	0.015 이하		○		"
	주석	- 4)		○		"
	퍼클로레이트	0.015 이하		○		"
유기물 (60항목)	과불화옥탄산(PFOA)	0.0007 이하 (개별, 합계)		○		"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0.00048 이하		○		"
	글라이포세이트	0.7 이하			○	"
	노닐페놀	0.3 이하		○		"
	2,4-디(2,4-D)	0.03 이하			○	"
	디메토에이트	0.006 이하			○	"
	디부틸프탈레이트	0.2 이하			○	"
	2,4-디비(2,4-DB)	0.09 이하			○	"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4 이하		○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0.008 이하		○		"
	디엘드린	0.00003 이하			○	"

구 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월간	분기	연간	
	1,2-디클로로벤젠	1 이하			○	〃
	1,3-디클로로벤젠				○	〃
	1,4-디클로로벤젠				○	〃
	1,1-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	〃
	1,2-디클로로에틸렌	0.05 이하			○	〃
	1,2-디클로로프로판	0.04 이하			○	〃
	1,3-디클로로프로펜	0.02 이하		○		〃
	마이크로시스틴(6종)	0.001 이하		○ 7)		〃
	메토밀	0.03 이하			○	〃
유기물 (60항목)	메톨라클러	0.01 이하			○	정수
	메틸디메톤	0.0005 이하			○	〃
	메틸파라티온	0.1 이하			○	〃
	모노클로로벤젠	0.1 이하			○	〃
	몰리네이트	0.006 이하			○	〃
	벤조(에이)피렌	0.0007 이하			○	〃
	부타클러	0.05 이하			○	〃
	부틸벤질프탈레이트	0.5 이하			○	〃
	비스페놀 에이	0.1 이하		○		〃
	스티렌	0.02 이하			○	〃
	시마진	0.002 이하			○	〃
	아나톡신-에이	0.005 이하		○ 7)		〃
	알드린	0.00003 이하			○	〃
	알라클러	0.02 이하			○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0.0004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004 이하		○		〃
	엔도설판	0.03 이하			○	〃
	엔드린	0.0006 이하			○	〃
	엠티비이(MTBE)	0.02 이하			○	〃
	염화비닐	0.0003 이하			○	〃
	이프로벤포스	0.008 이하			○	〃
	이피엔(EPN)	0.0005 이하			○	〃
	카보푸란	0.007 이하			○	〃
	클로로에탄	0.005 이하		○		〃
	클로르피리포스	0.03 이하			○	〃
	터부틸아진	0.007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	0.005 이하			○	〃

구 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월간	분기	연간	
	트리플루랄린	0.02 이하			○	"
	2,4,5-티	0.009 이하			○	"
	퍼메트린	0.1 이하			○	"
	페노브카브	0.03 이하			○	"
	펜디메탈린	0.02 이하			○	"
	펜타클로로페놀	0.009 이하			○	"
	펜토에이트	0.0005 이하			○	"
	포레이트	0.002 이하			○	"
	헥사클로로부타디엔	0.0006 이하			○	"
	헵타클로	0.0004 이하			○	"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0.0002 이하			○	"
소독 부산물 (19항목)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0.00007이하		○		"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0.00002이하		○		"
	디브로모아세트산	0.06 이하		○		"
	디클로로아세트산			○		"
	모노브로모아세트산			○		"
	모노클로로아세트산			○		"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		"
	트리클로로아세트산			○		"
	1,1-디클로로아세톤	0.05 이하		○		"
	1,1,1-트리클로로아세톤			○		"
	2,4-디클로로페놀	0.15 이하			○	"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5 이하		○		"
	브로모포름	0.1 이하		○		"
	아세트알데히드	0.5 이하	○			"
	클로라이드	0.7 이하		○		"
	클로레이트	0.7 이하		○		"
	클로로페놀	0.2 이하			○	"
	클로로피크린	- 4)		○		"
	2,4,6-트리클로로페놀	0.015 이하			○	"
심미적 물질 (11항목)	나트륨	200 이하		○		정수
	마그네슘	- 4)		○		"
	부식성지수 8)	- 4)		○		"
	2-엠아이비	0.00002 이하	○			"
	은	0.1 이하			○	"
	입자수	- 4)	○			"
	지오스민	0.00002 이하	○			"

구 분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 대상
			월간	분기	연간	
	총유기탄소	5 이하	○			"
	칼륨	12 이하		○		"
	칼슘	- 4)		○		"
	칼따구유층	0 개체/100 L	○			"
방사성 물질 (1항목)	요오드-131	10 Bq/L 이하		○		"

- 1) 바이러스를 99.99%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
- 2) 지아디아를 99.9%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
- 3) 크립토스포리디움을 99%이상 제거
- 4) 주석, 클로로피크린, 마그네슘, 부식성지수, 입자수, 칼슘 : 수질 기준 미설정
- 5) 분기별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L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 6) 분기별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L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 7) 정수의 마이크로시스틴(6종)(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LA, -LY 및 -LF의 총합) 또는 아나톡신-에이 검사주기는 원수에 대한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실시한다.

대상 항목 (2)	검사 주기	검사 시기
마이크로시스틴(6종) 아나톡신-에이	1회/주	원수 남조류 세포수 1,000 cells/mL 이상
	2회/주	원수 남조류 세포수 10,000 cells/mL 이상
	3회/주	원수 남조류 세포수 1,000,000 cells/mL 이상

- 8) 부식성지수는 랑게리아지수(Langelier index, LI)를 적용한다.

<별표 8>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검사방법 (제40조 관련)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미생물 (10항목)	녹농균	시험관법
	바이러스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
	분원성연쇄상구균	시험관법
	살모넬라	막여과법
	쉬겔라	막여과법
	야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시험관법
	장구균	막여과법
	저온일반세균	주입평판법
	지아디아	면역형광항체법
	크립토스포리디움	면역형광항체법
무기물 (11항목)	니켈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몰리브덴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바륨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베릴륨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브롬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
	스트론튬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아질산성질소	크로마토그래프법
	안티몬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우라늄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주석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퍼클로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유기물 (60항목)	과불화옥탄산(PFOA)	크로마토그래프법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크로마토그래프법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크로마토그래프법
	글라이포세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노닐페놀	크로마토그래프법
	2,4-디(2,4-D)	크로마토그래프법
	디메토에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디부틸프탈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2,4-디비(2,4-DB)	크로마토그래프법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디엘드린	크로마토그래프법
	1,2-디클로로벤젠	크로마토그래프법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1,3-디클로로벤젠	크로마토그래프법
	1,4-디클로로벤젠	크로마토그래프법
	1,1-디클로로에탄	크로마토그래프법
	1,2-디클로로에탄	크로마토그래프법
	1,2-디클로로에틸렌	크로마토그래프법
	1,2-디클로로프로판	크로마토그래프법
	1,3-디클로로프로펜	크로마토그래프법
	마이크로시스틴(6종)	크로마토그래프법
	메토밀	크로마토그래프법
	메톨라클러	크로마토그래프법
	메틸디메톤	크로마토그래프법
	메틸파라티온	크로마토그래프법
	모노클로로벤젠	크로마토그래프법
	몰리네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벤조(에이)피렌	크로마토그래프법
	부타클러	크로마토그래프법
	부틸벤질프탈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비스페놀 에이	크로마토그래프법
	스티렌	크로마토그래프법
유기물 (60항목)	시마진	크로마토그래프법
	아나톡신-에이	크로마토그래프법
	알드린	크로마토그래프법
	알라클러	크로마토그래프법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크로마토그래프법
	에피클로로히드린	크로마토그래프법
	엔도설판	크로마토그래프법
	엔드린	크로마토그래프법
	엠티비이(MTBE)	크로마토그래프법
	염화비닐	크로마토그래프법
	이프로벤포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이피엔(EPN)	크로마토그래프법
	카보푸란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로에탄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르피리포스	크로마토그래프법
	터부틸아진	크로마토그래프법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1,1,2-트리클로로에탄	크로마토그래프법
	트리플루랄린	크로마토그래프법
	2,4,5-티	크로마토그래프법
	퍼메트린	크로마토그래프법
	페노브카브	크로마토그래프법
	펜디메탈린	크로마토그래프법
	펜타클로로페놀	크로마토그래프법
	펜토에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포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크로마토그래프법
	헵타클로	크로마토그래프법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크로마토그래프법
소독 부산물 (19항목)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크로마토그래프법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DEA)	크로마토그래프법
	디브로모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디클로로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모노브로모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모노클로로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크로마토그래프법
	1,1-디클로로아세톤	크로마토그래프법
	1,1,1-트리클로로아세톤	크로마토그래프법
	2,4-디클로로페놀	크로마토그래프법
	브로모클로로아세 토니트릴	크로마토그래프법
	브로모포름	크로마토그래프법
	아세트알데히드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라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로페놀	크로마토그래프법
	클로로피크린	크로마토그래프법
	2,4,6-트리클로로페놀	크로마토그래프법
심미적 물질 (11항목)	나트륨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마그네슘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부식성지수	링게리아지수(LI)
	2-엠아이비	크로마토그래프법
	은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구분	감시항목	검사방법
	입자수	광차단법
	지오스민	크로마토그래프법
	총유기탄소	습식산화법
	칼륨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칼슘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칼따구유충	현미경계수법
방사성물질 (1항목)	요오드-131	감마분광법

※ 세부검사방법은 서울물연구원장이 정한다.

<별표 9>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제42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미생물 (1항목)	1	장구균	28,100
무기물 (11항목)	2	니켈	6,600
	3	몰리브덴	6,600
	4	바륨	6,100
	5	베릴륨	6,600
	6	브롬이온	7,200
	7	스트론튬	6,100
	8	아질산성질소	7,200
	9	안티몬	6,900
	10	우라늄	10,600
	11	주석	6,600
	12	퍼클로레이트	7,200
유기물 (60항목)	13	과불화옥탄산(PFOA)	30,000
	14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30,000
	15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30,000
	16	글라이포세이트	15,700
	17	노닐페놀	29,200
	18	2,4-디(2,4-D)	29,200
	19	디메토에이트	15,600
	20	디부틸프탈레이트	20,300
	21	2,4-디비(2,4-DB)	29,200
	22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20,300
	23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0,300
	24	디엘드린	15,600
	25	1,2-디클로로벤젠	13,600
	26	1,3-디클로로벤젠	13,600
	27	1,4-디클로로벤젠	13,600
	28	1,1-디클로로에탄	13,600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29	1,2-디클로로에탄	13,600
	30	1,2-디클로로에틸렌	13,600
	31	1,2-디클로로프로판	13,600
	32	1,3-디클로로프로펜	13,600
	33	마이크로시스틴(6종)	15,600
	34	메토밀	15,700
	35	메톨라클러	15,600
	36	메틸디메톤	15,600
	37	메틸파라티온	15,600
	38	모노클로로벤젠	13,600
	39	몰리네이트	15,600
	40	벤조(에이)피렌	15,700
	41	부타클러	15,600
	42	부틸벤질프탈레이트	20,300
	43	비스페놀 에이	29,200
	44	스티렌	13,600
	45	시마진	15,600
유기물 (60항목)	46	아나톡신-에이	30,000
	47	알드린	15,600
	48	알라클러	15,600
	49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21,400
	50	에피클로로히드린	13,600
	51	엔도설판	15,600
	52	엔드린	15,600
	53	엠티비이(MTBE)	13,600
	54	염화비닐	13,600
	55	이프로벤포스	15,600
	56	이피엔(EPN)	15,600
	57	카보푸란	15,700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58	클로로에탄	13,600
	59	클로르피리포스	15,600
	60	터부틸아진	15,600
	61	1,1,2-트리클로로에탄	13,600
	62	트리플루랄린	15,600
	63	2,4,5-티	29,200
	64	퍼메트린	15,600
	65	페노브카브	15,700
	66	펜디메탈린	15,600
	67	펜타클로로페놀	29,200
	68	펜토에이트	15,600
	69	포레이트	15,600
	70	헥사클로로부타디엔	13,600
	71	헵타클로	15,600
	72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15,600
소독부산물 (17항목)	73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30,000
	74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DEA)	30,000
	75	디브로모아세트산	29,200
	76	모노브로모아세트산	29,200
	77	모노클로로아세트산	29,200
	78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29,200
	79	1,1-디클로로아세톤	21,400
	80	1,1,1-트리클로로아세톤	21,400
	81	2,4-디클로로페놀	29,200
	82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21,400
	83	브로모포름	19,600
	84	아세트알데히드	15,700
	85	클로라이트	7,200
	86	클로레이트	7,200
	87	클로로페놀	29,200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88	클로로파크린	21,400
	89	2,4,6-트리클로로페놀	29,200
심미적 물질 (11항목)	90	나트륨	6,100
	91	마그네슘	6,100
	92	부식성지수	16,000
	93	2-엠아이비	19,600
	94	은	6,600
	95	입자수	6,500
	96	지오스민	19,600
	97	총유기탄소	13,600
	98	칼륨	6,100
	99	칼슘	6,100
	100	깎따구유충	10,000
방사성물질 (1항목)	101	요오드-131	30,000

주 : 동시 분석할 경우

- 1)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20,300원
- 2) 클로로에탄, 스티렌, 염화비닐은 13,600원
- 3) 디브로모아세트산, 모노브로모아세트산, 모노클로로아세트산은 29,200원
- 4)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아세트니트릴은 21,400원
- 5)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펜타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은 29,200원
- 6) 2-엠아이비, 지오스민은 19,600원
- 7)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30,000원
- 8)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30,000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도 물 수질검사 감시항목과 수질기준, 수수료 등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 감시항목 개정(별표 7)

- “마이크로시스틴-LR” 을 “마이크로시스틴(6종)” 으로 개정
- “깎따구 유충” 신설

나. 수질검사 감시항목 개정에 따라 감시항목의 수질기준·검사주기·대상(별표 7), 검사방법(별표 8), 수수료(별표 9)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0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 중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맡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등을 정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 ·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 ·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 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2. 고소 · 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시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본청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접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제1항의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선임비용을 지급한 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
5. 제1항제5호의 경우 요청을 받은 날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의 취소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임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임비용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복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변호인 추천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적용범위(제2조)

다.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제3조)

라. 적극행정위원회(제4조)

마.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및 선임(제5~6조)

바.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7조)

사.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등(제8~9조)

아.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10조)

자. 위원회 상정·심의(제11조)

차.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2조)

카. 자료의 제출(제13조)

타. 보고(제14조)

파. 지원의 취소 및 선임비용의 반환(제15~16조)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4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 허가구역 재지정지역 : 19개소(0.94km²)

○ 공공재개발 후보지 : 8개소(137,126m²)

－ 지정기간 :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7,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1,248	공공재개발 후보지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11,204	
		용두동 14-1번지 일대	20,780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2,870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2,441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11,082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45,229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12,272	

-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예정지 : 10개소(751,730㎡)
 - 지정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71,416.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40,648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63,893	
	마포구	대흥동 22-147번지 일대	35,691	
	영등포구	신길동 1499번지 일대	21,585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	51,466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44,082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51,071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62,370	
		신천동 7번지 일대	343,266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일대	37,658	

□ 허가구역 변경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예정지 : 1개소(47,798㎡)
 - 지정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47,915	47,79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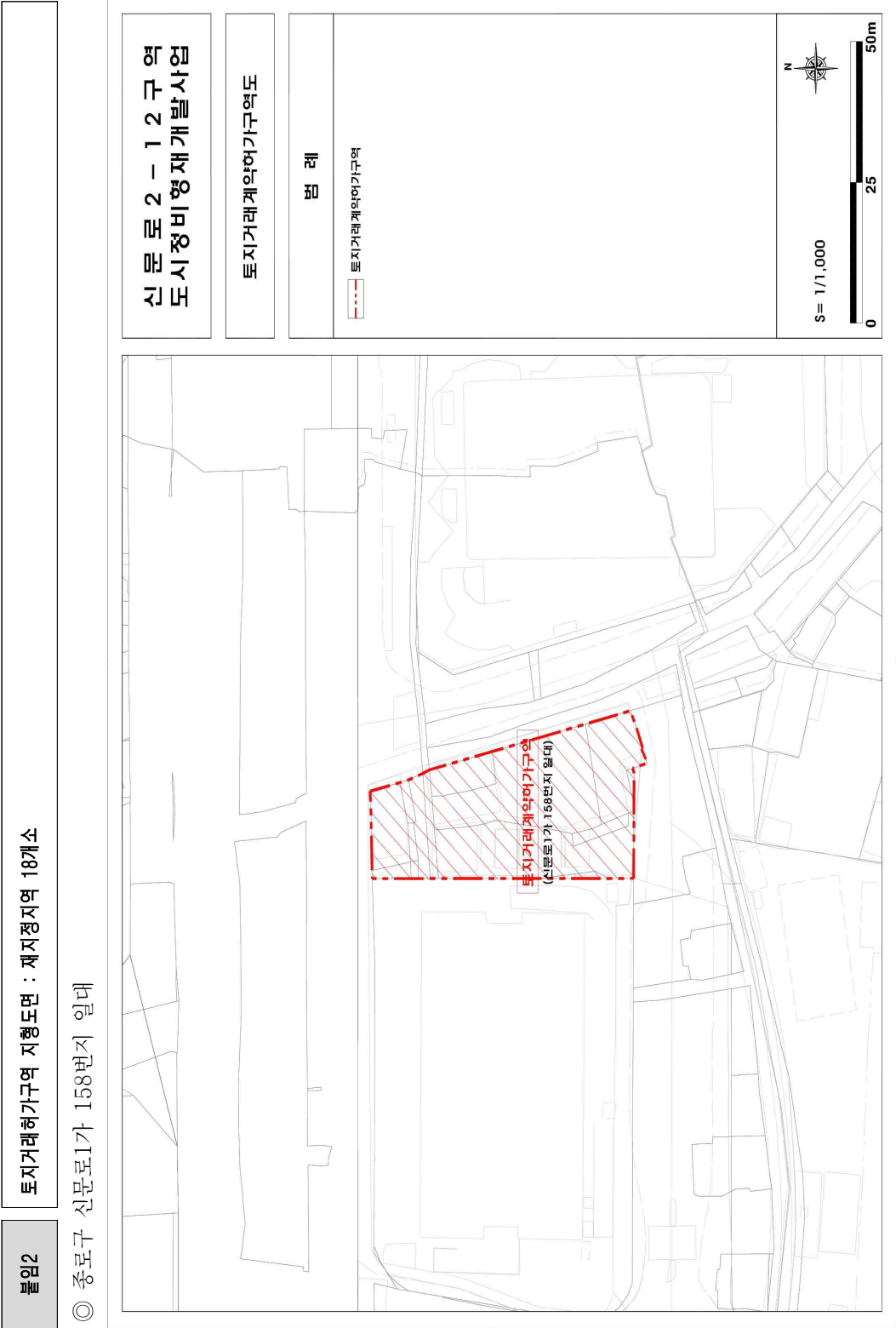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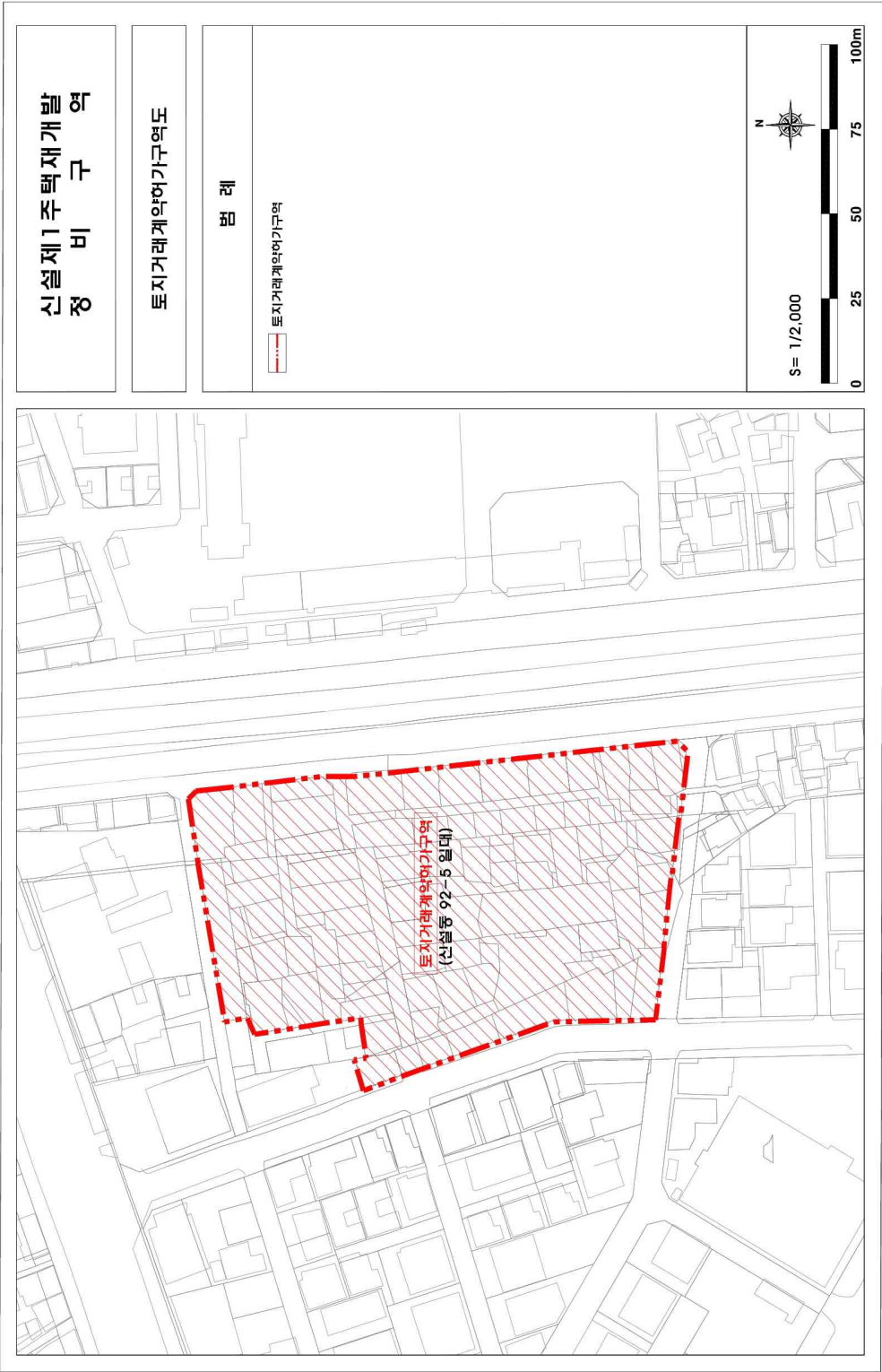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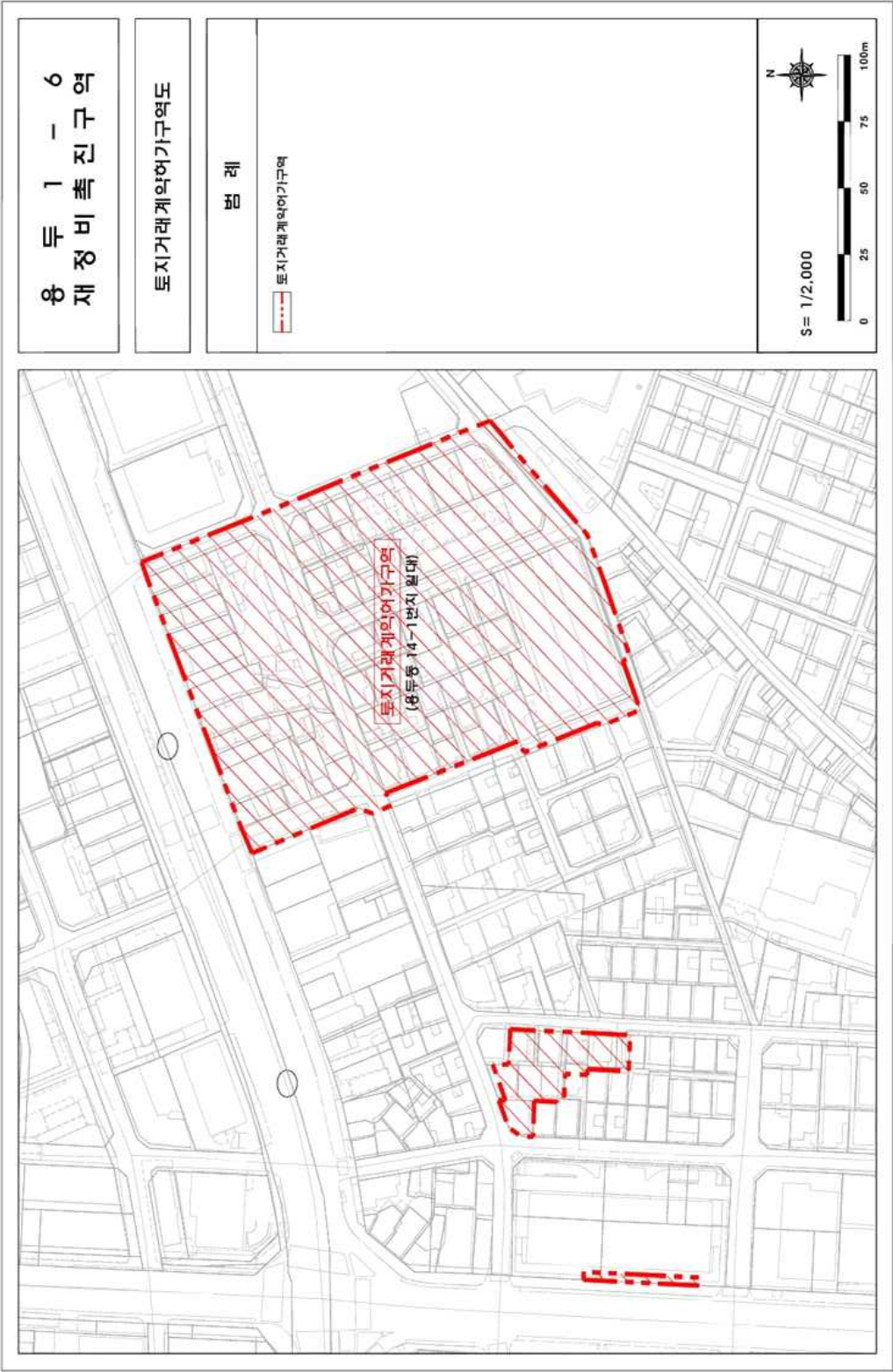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 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



용두 1 - 6
재정비촉진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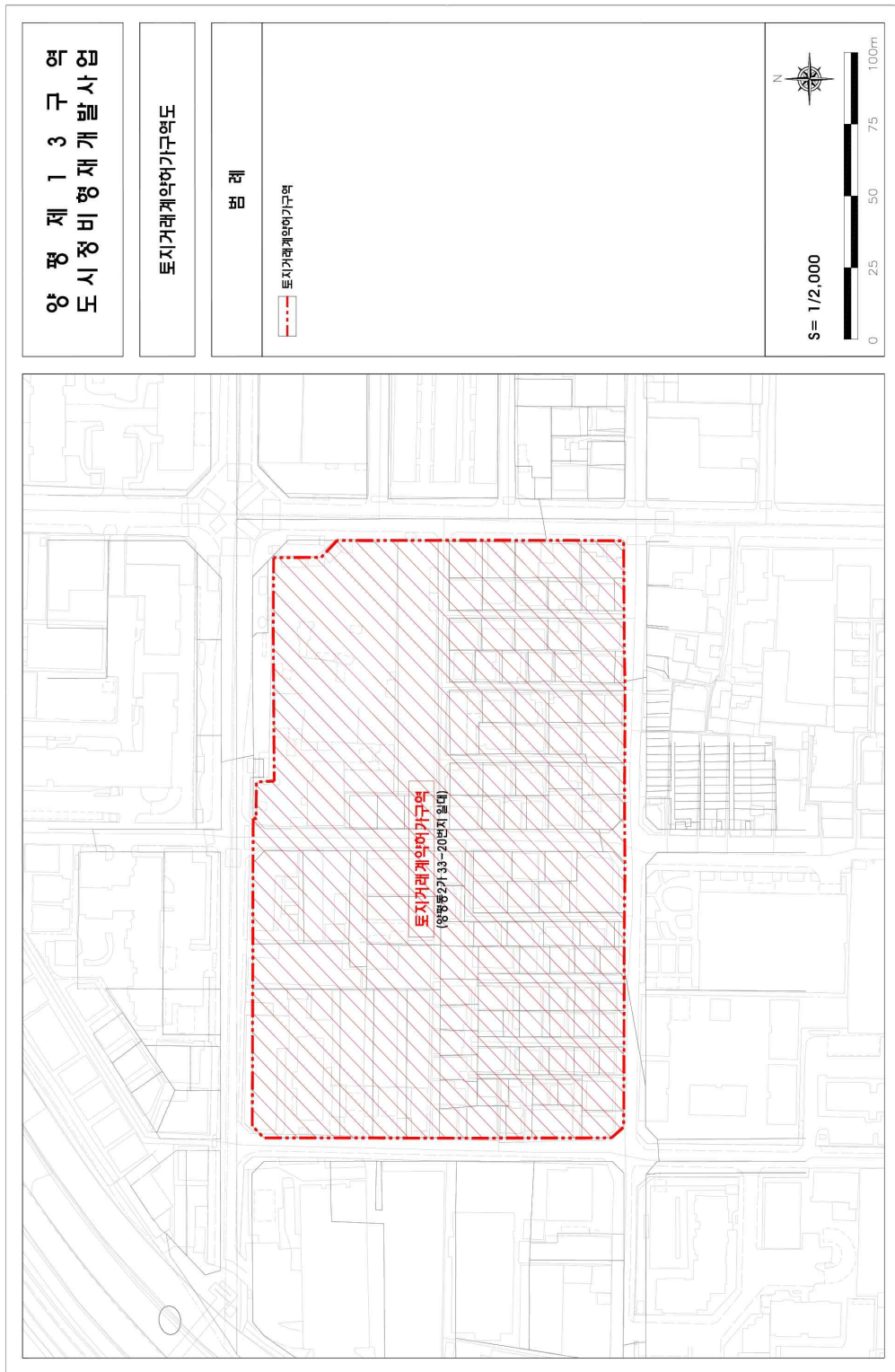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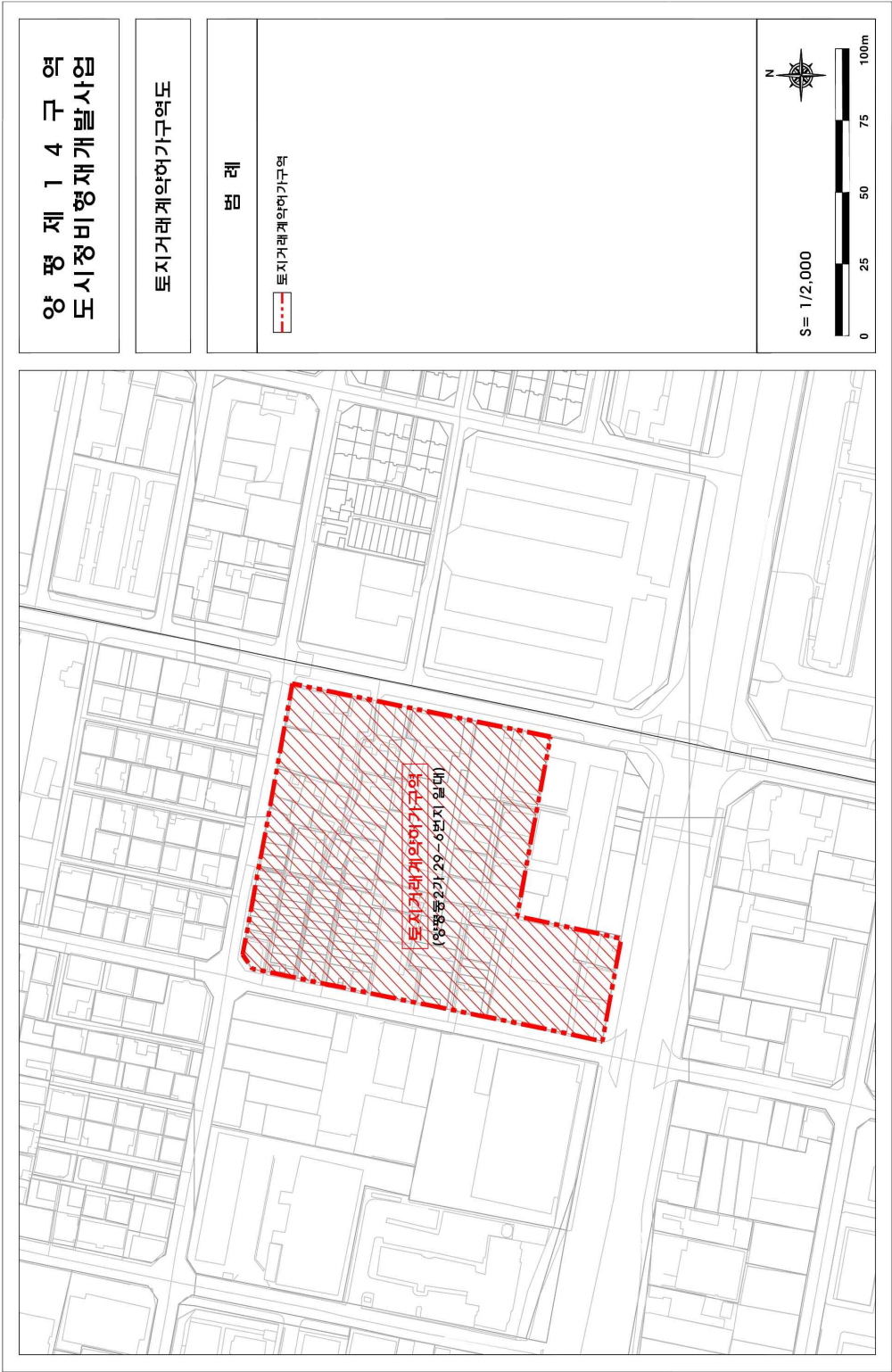
scale = 1 : 1,500

0 10 25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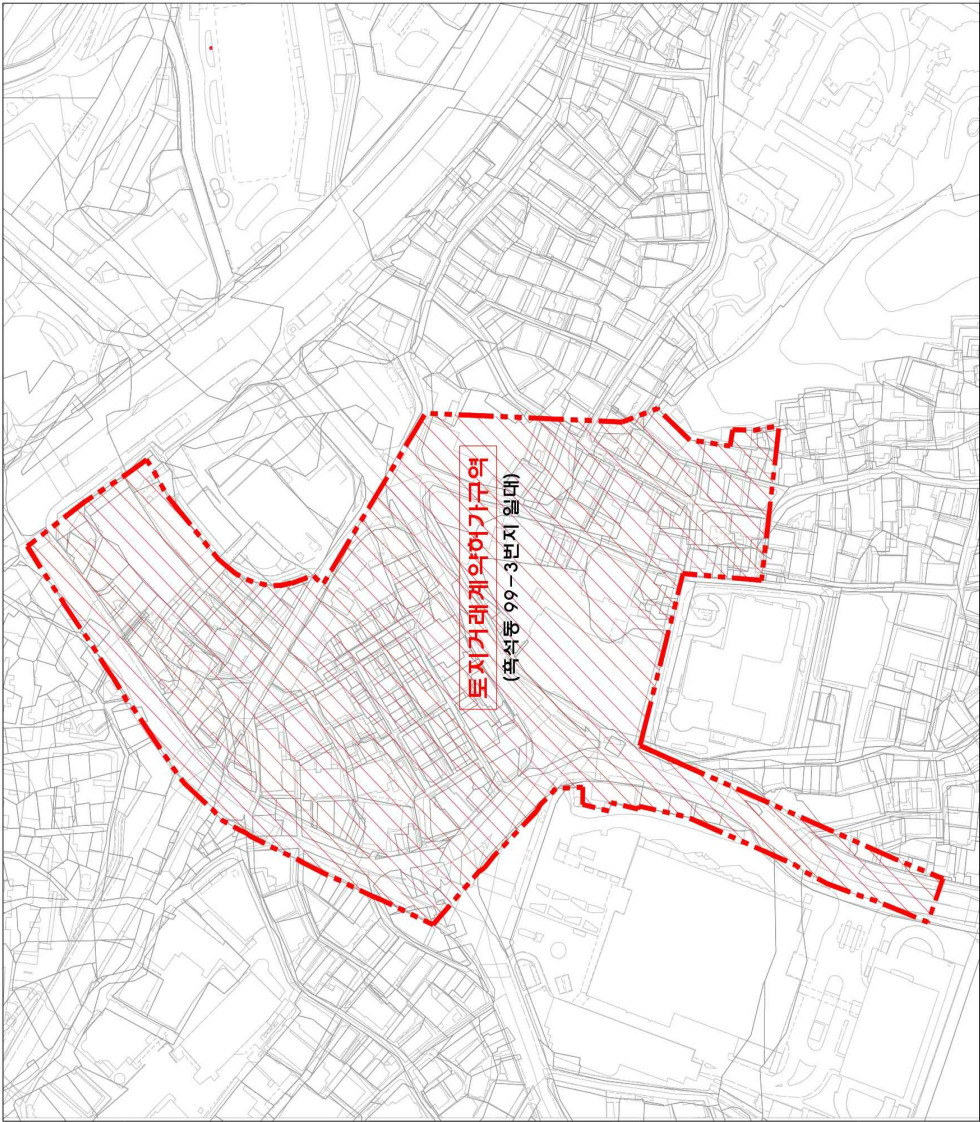
◎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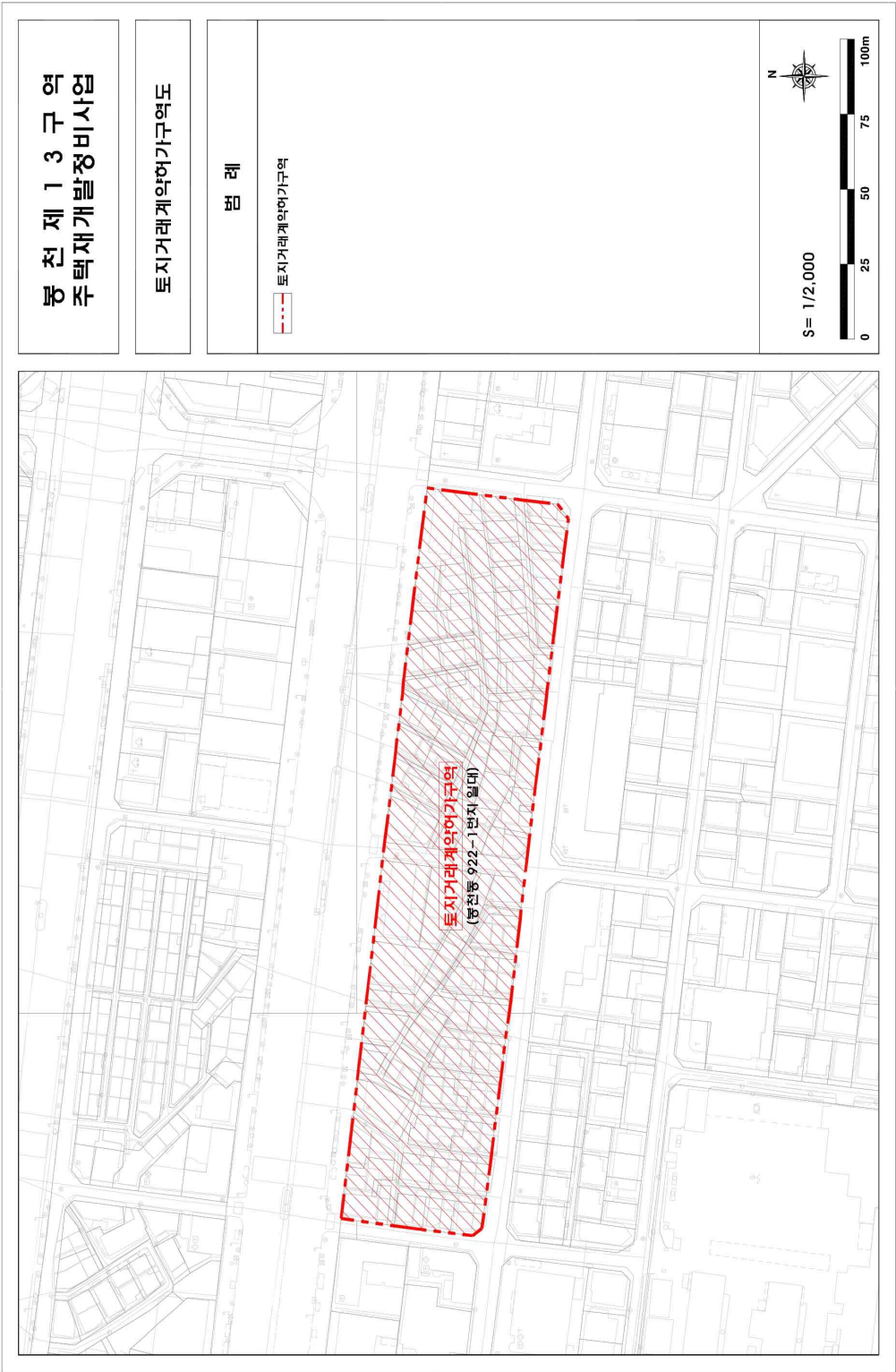
흑석2재정비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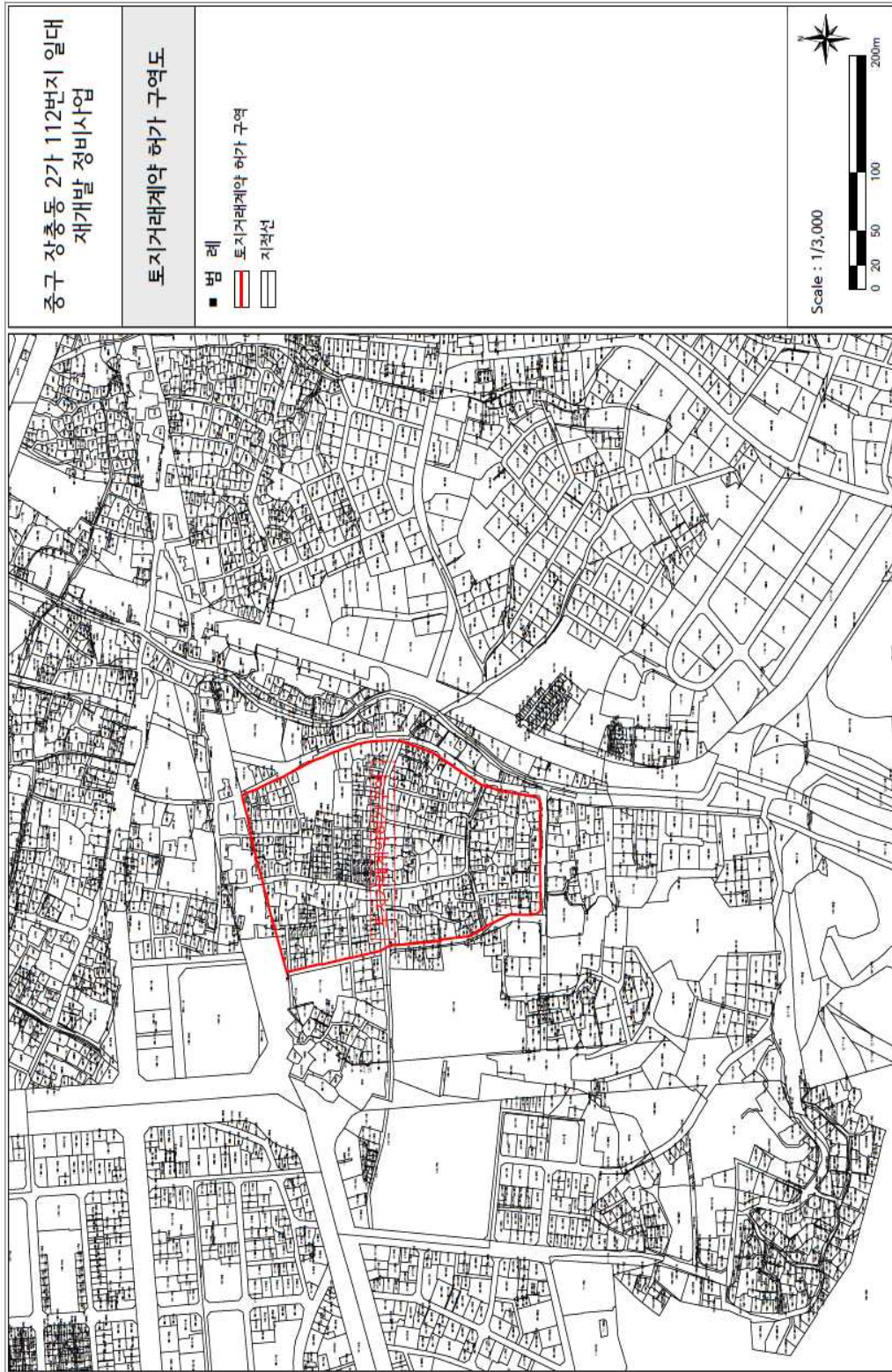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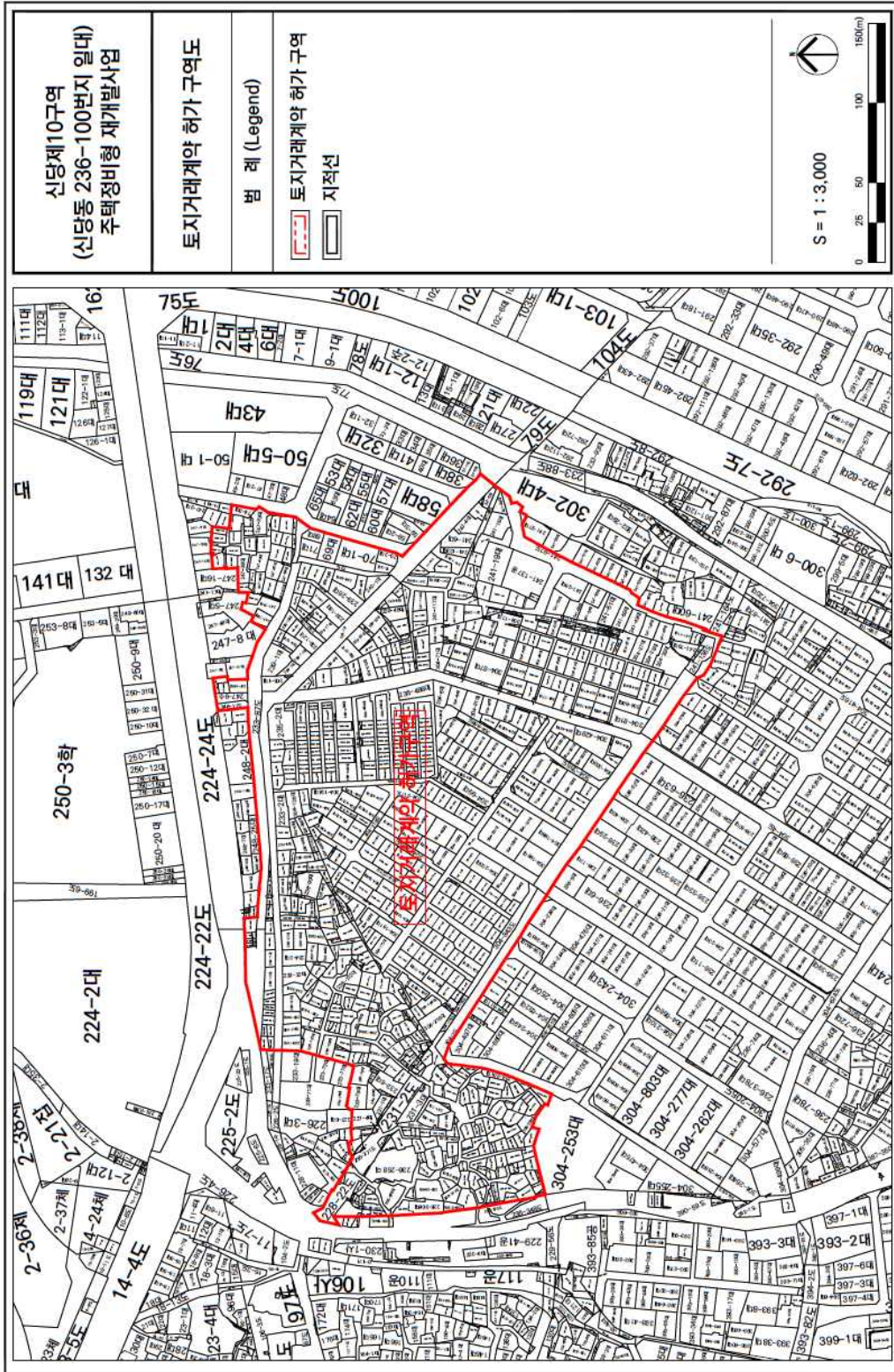
○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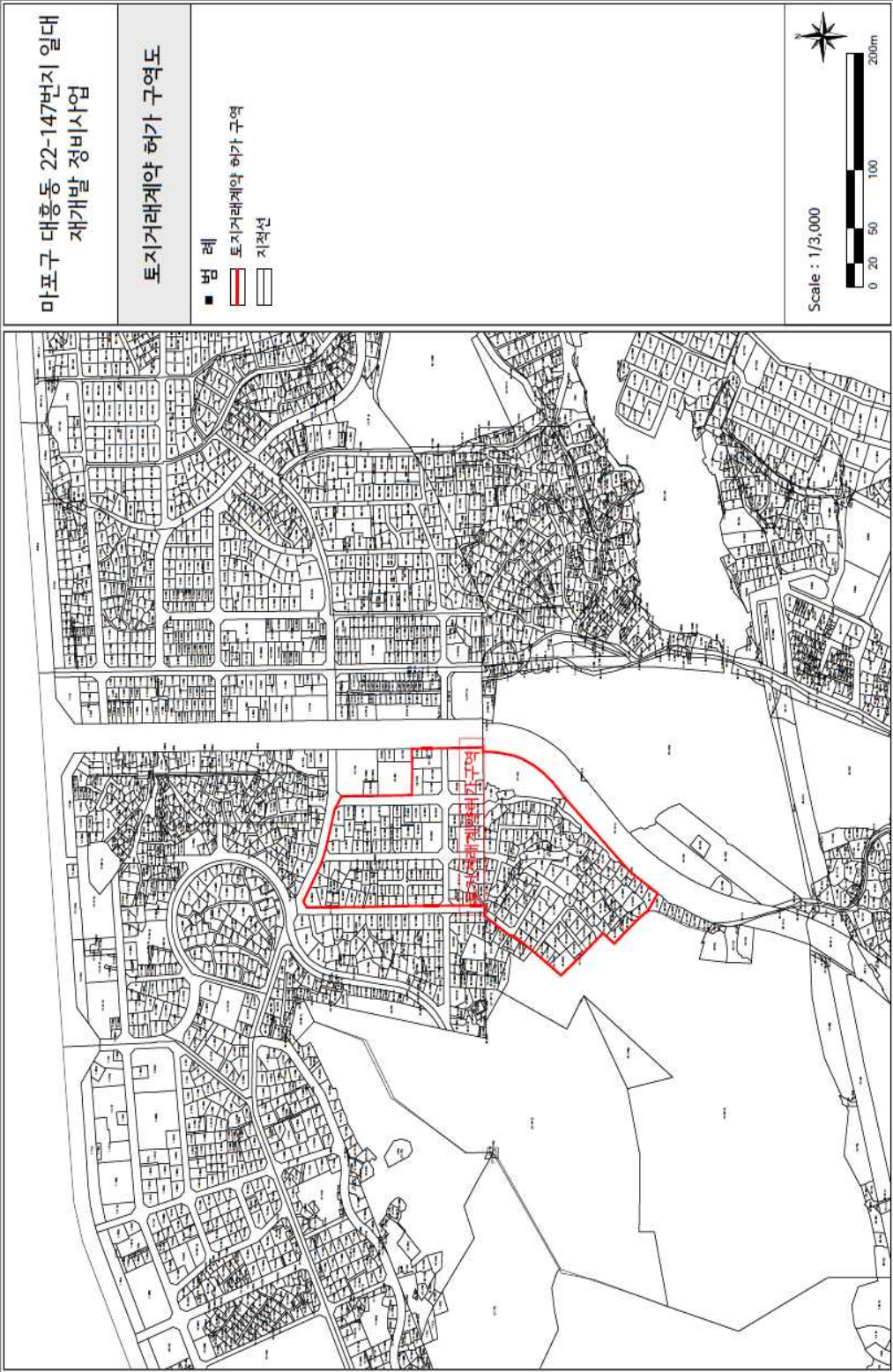
◎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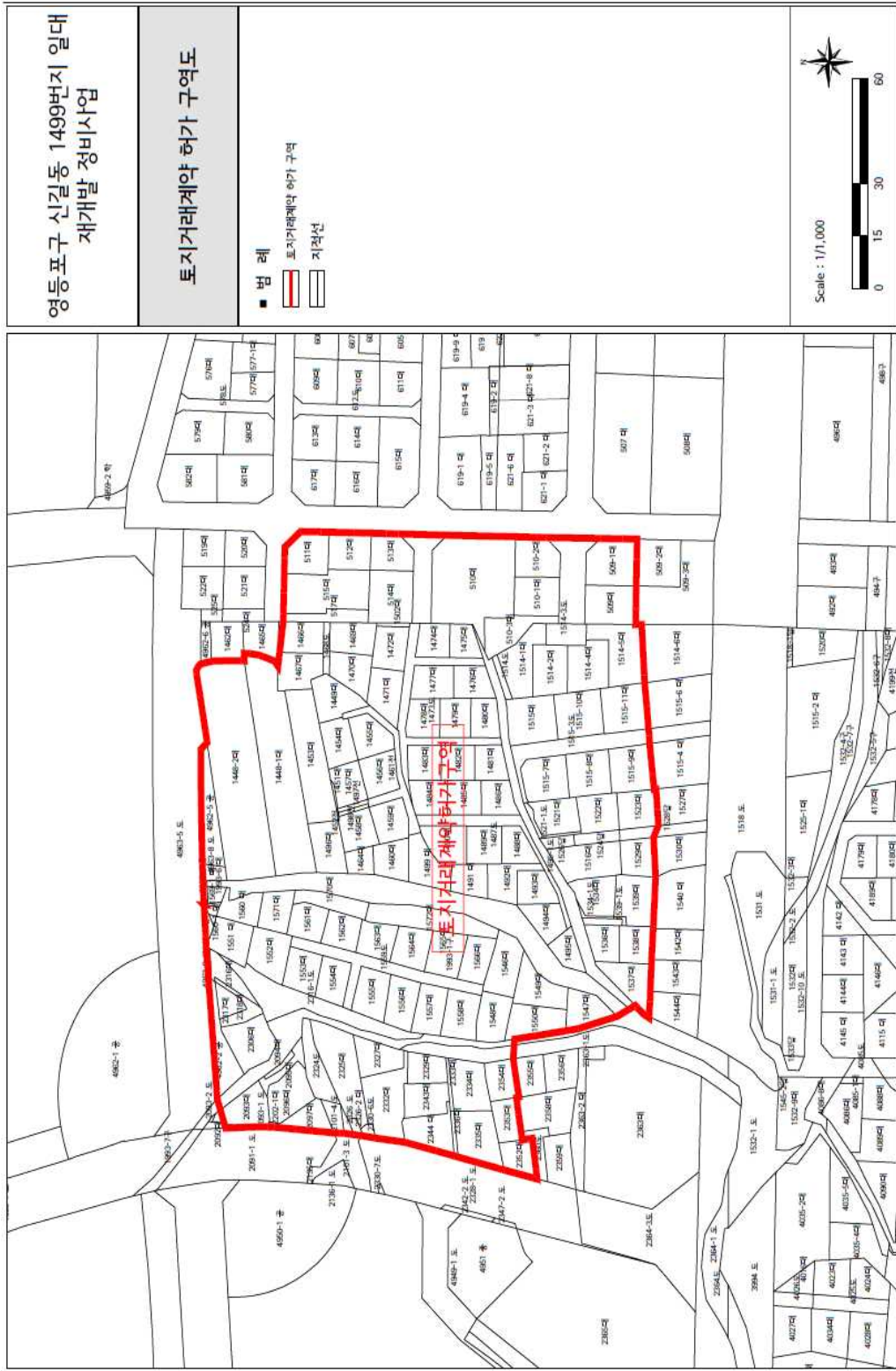
○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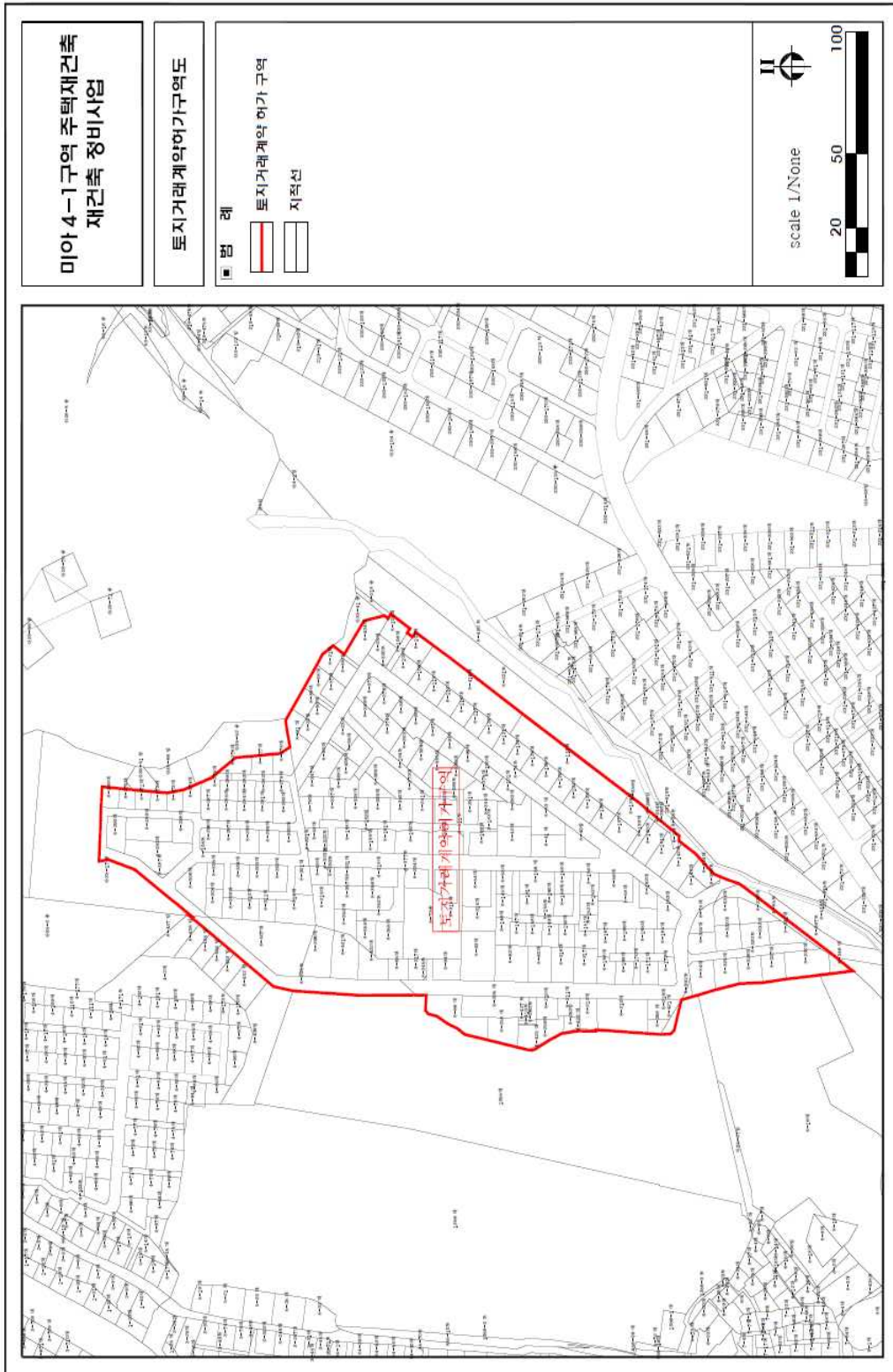
◎ 마포구 대흥동 22-147번지 일대



© 영등포구 신길동 149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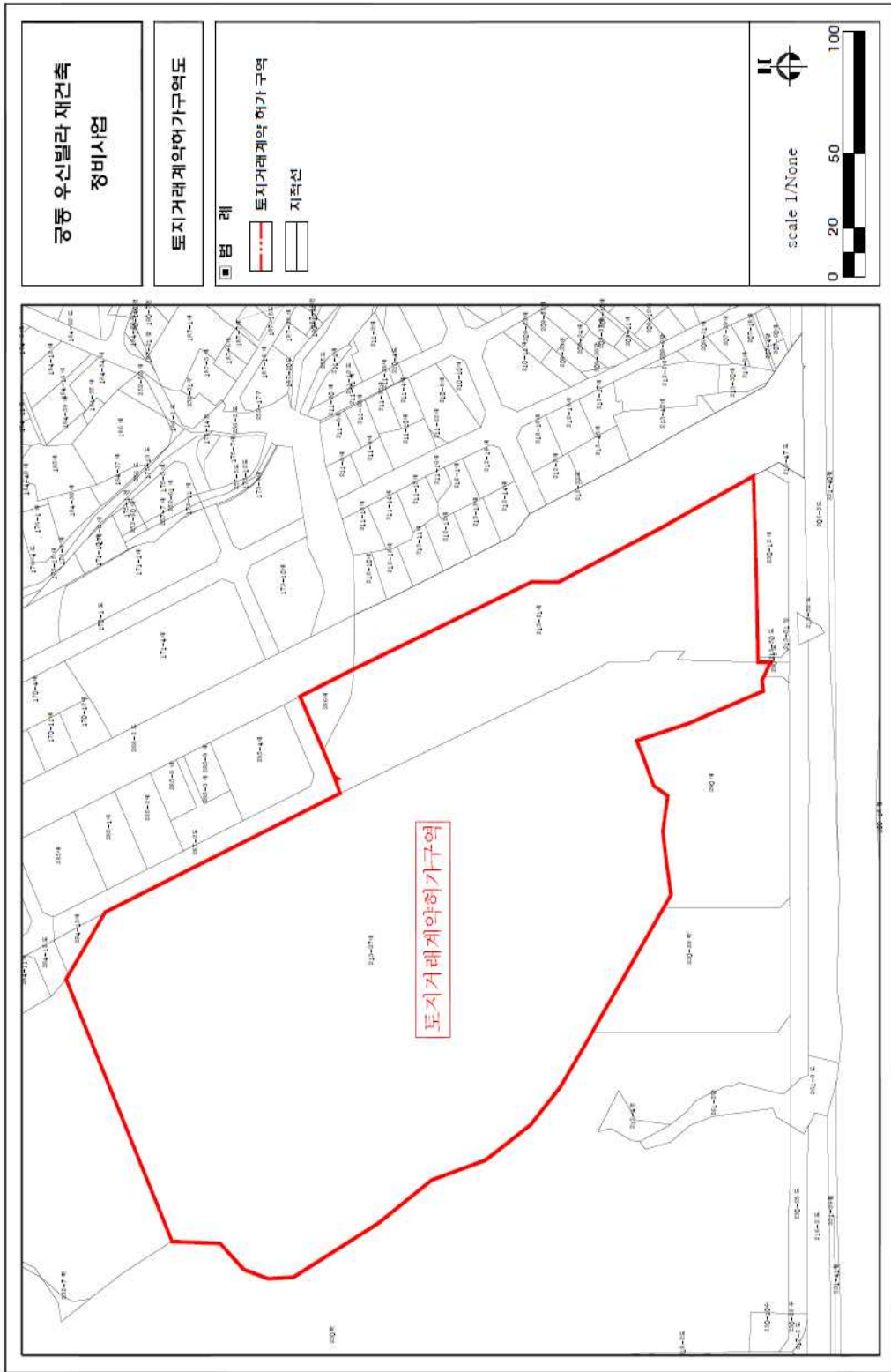
◎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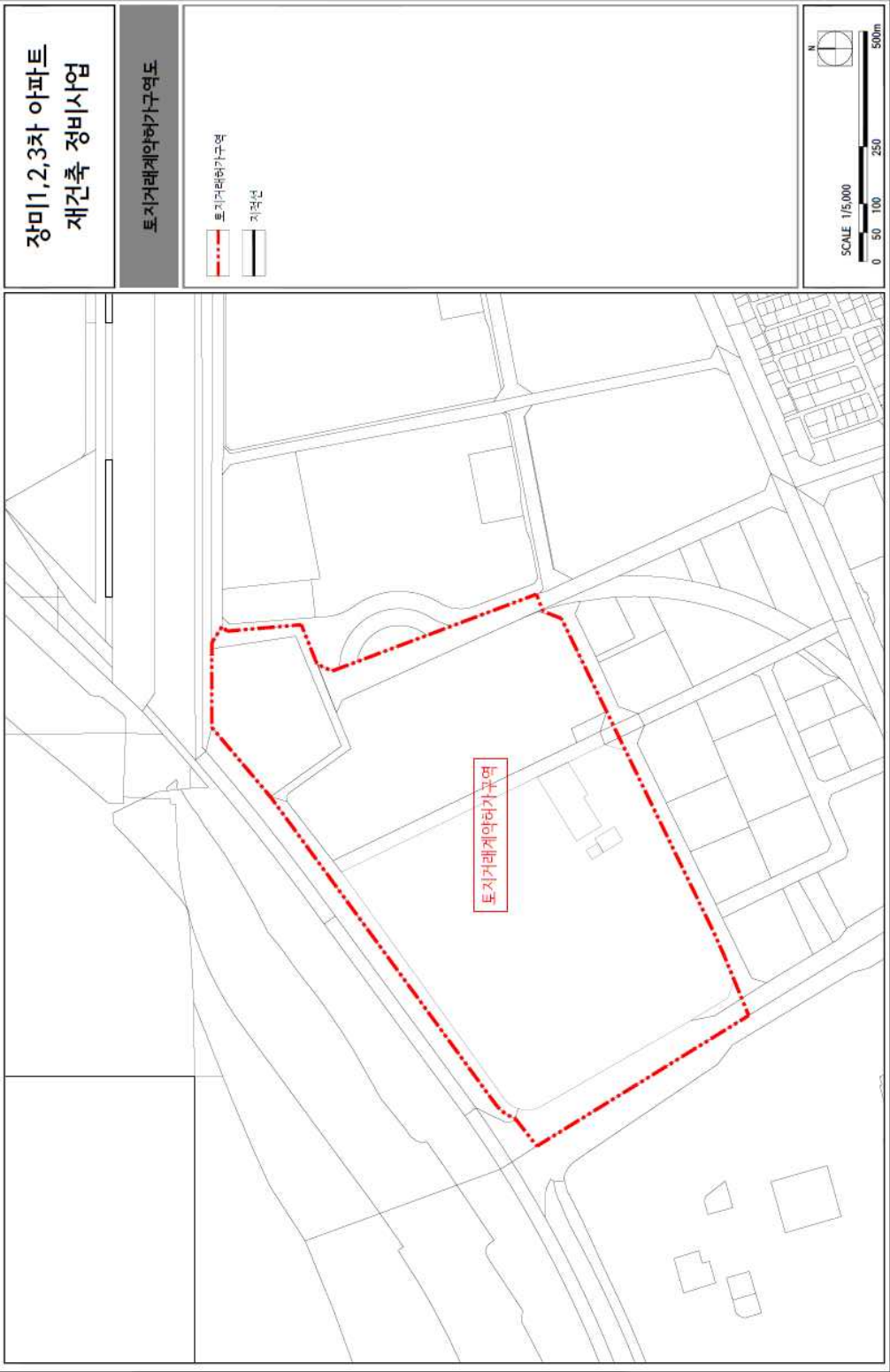
©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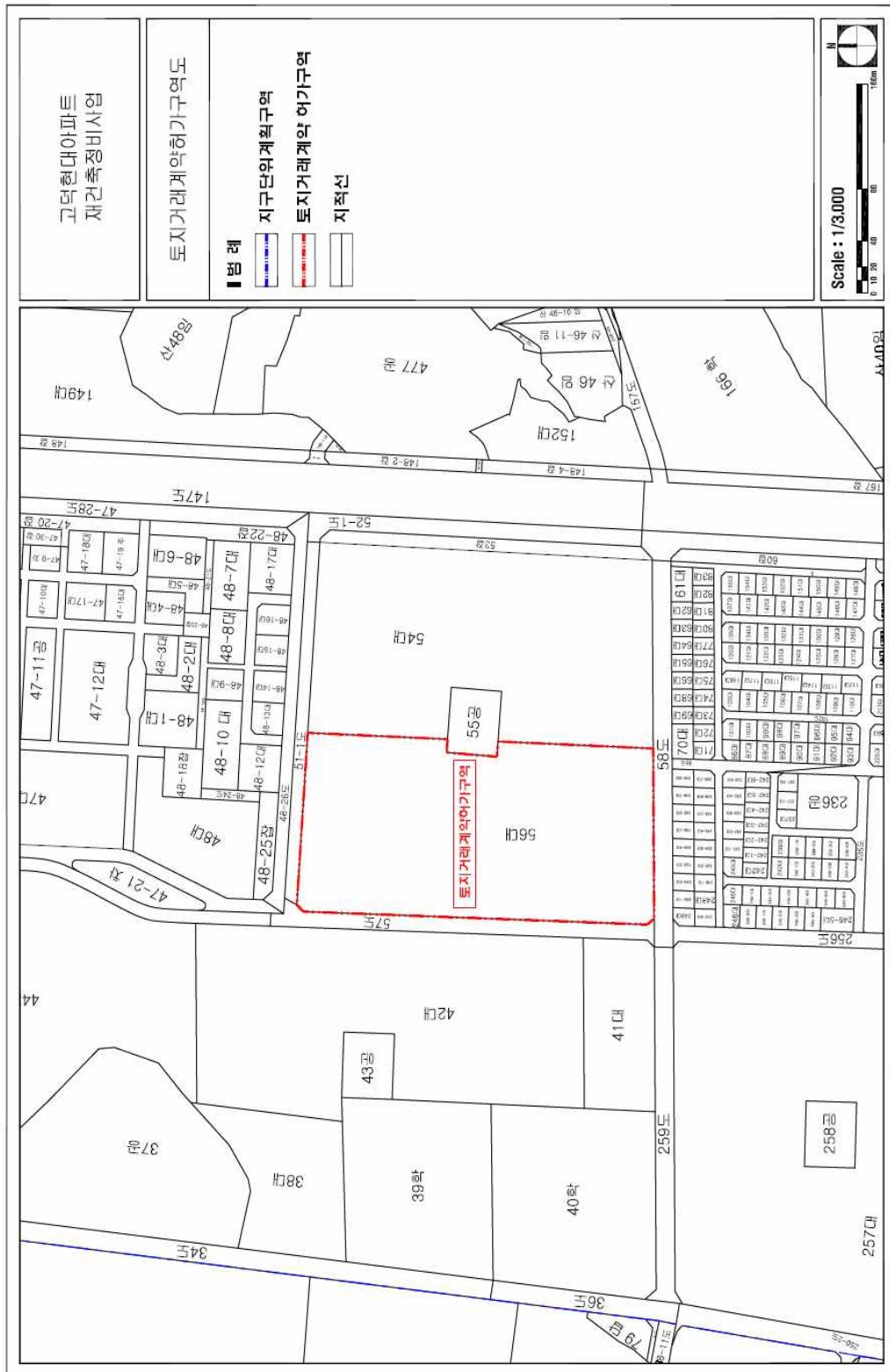


◎ 구로구 공동 213-27 외 2필지



◎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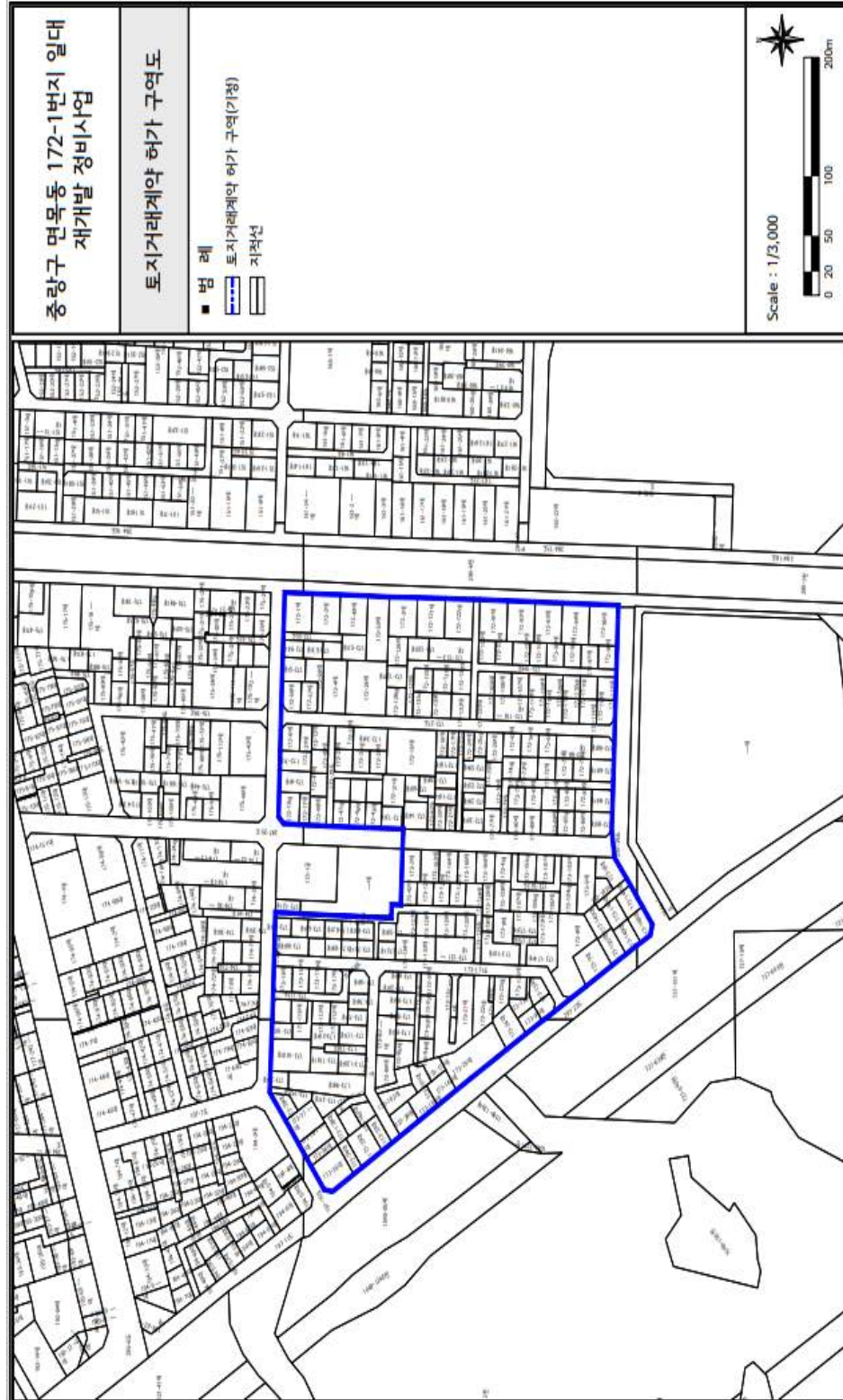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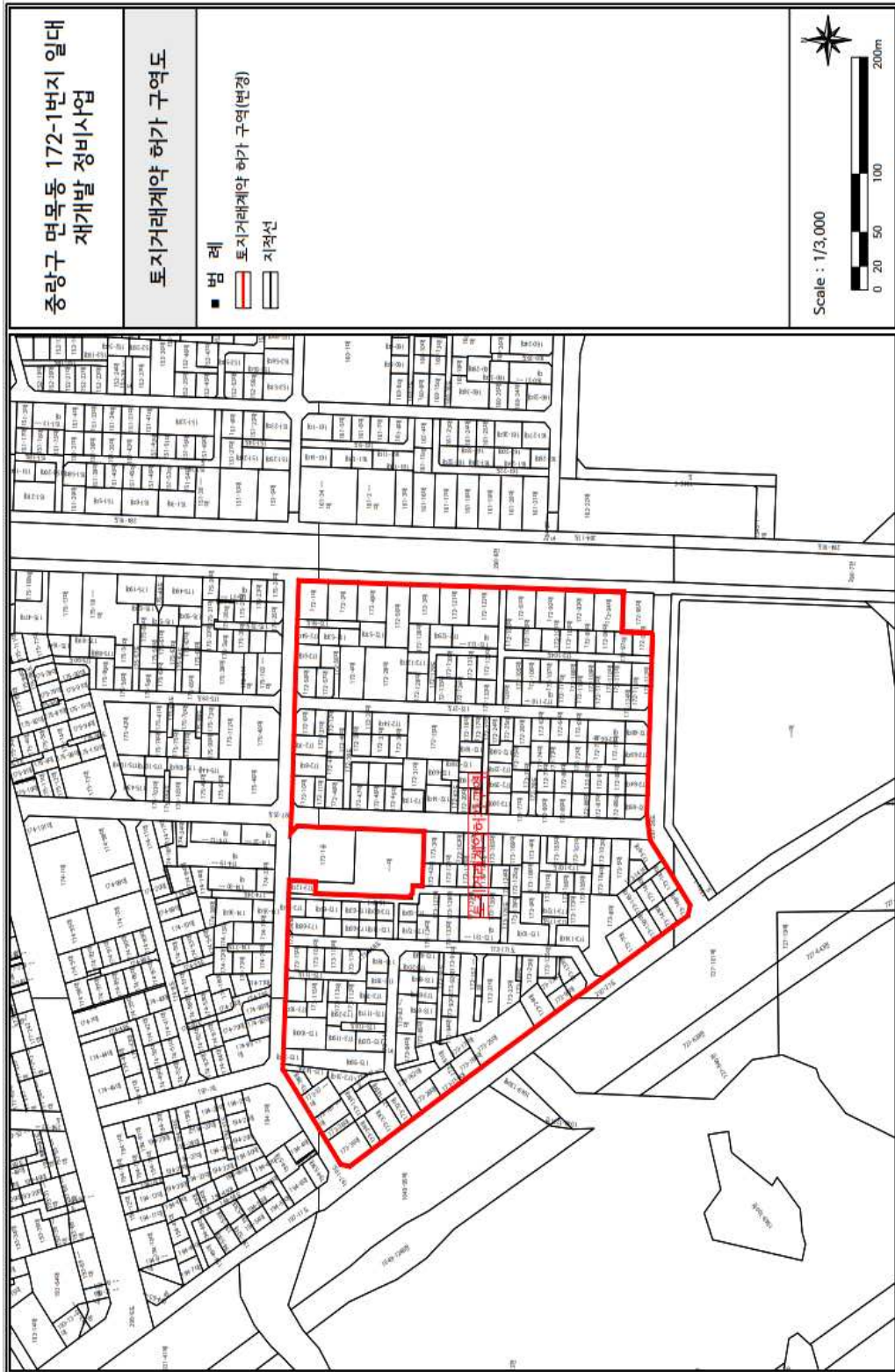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변경지역 1개소

붙임2

○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기정)



◎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변경)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